

장애학생 지원센터규정

제정 : 2015.06.17

개정 : 2018.09.13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3.10.16

개정 : 2024.03.01

제1조(목적)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생활환경에서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2.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01.>

1. “장애학생”이라 함은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저하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12.01.>
2.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지원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01.>

제4조(교수학습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권고
2. 도우미 배정
3.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4. 강의실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강의실 변경 조치

제5조(편의시설 및 이동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개선
2.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

제6조(업무) ①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01.>

- 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01.>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2.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3.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관리
 4. 장애학생의 취학편의 및 정보접근 지원
 5. 장애학생 상담
 6.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지원센터위원회(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⑤ 센터에 관리직원 및 특수교육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교육 보조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⑥ 센터의 중요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 ①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운영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센터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평가
 4. <삭제 2024.03.01.>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입학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생생활관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13., 2020.03.01., 2023.10.16>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간사 1명은 둔다.
-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2024.03.01.>

제8조(배상책임)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는 장애학생이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01.>

제9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학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